

주식업무 단위별 체크리스트 5

주식매수선택권

손성진 대리(조사1팀 감사제도파트)

※ 본 자료는 상장회사 주식·공시업무 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주식업무를 주제별로 나누어 각 단위별로 실무자가 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하여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상장회사에서 요청하는 주제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매월 연재할 계획이다. <편집자 註>

※ 법규 약어표

- (거래법) 증권거래법
- (발행공시규정)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
- (공시규정)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

1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정

주요 점검사항 및 관련법규	세 부 점 검 사 항	체 크
<p>1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목적·대상이 적절한가?</p> <p>(관련 법규) 상법 제340조의2, 거래법 제189조의4, 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, 발행공시규정 제105조·제111조</p>	<p>(1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·대상이 관련법령에 충족되고 있는가?</p> <p>※ 주식매수선택권은 당해 법인의 설립·경영·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함.</p> <p>※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해법인 또는 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,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	

※ “체크” 란은 회사 특성과 사정에 따라 담당자가 점검할 사항을 기재하는 란임.



주요 점검사항 및 관련법규	세 부 점 검 사 항	체 크
	<p>(2) 정관에 관련조항이 규정되어 있는가? ※ 정관에 정하여야 할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<p>【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정부주식매수선택권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부여수량, 행사가격 등이 고정되어 있는 유형.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활용. - 성과연동형주식매수선택권 :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성과에 연동하여 부여수량, 행사가격 등이 조정되는 유형. 	
<p>2.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떤 방식으로 부여할 것이며, 1주당 행사가액은 얼마로 정할 것인가? (관련 법규) 거래법 제189조의4 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②③④</p>	<p>(1)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할 것인가? ※ 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교부하는 방식(신주발행형),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(자기주식교부형),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(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함)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(주가차액보상형)이 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기주식교부형 방식을 택한 법인은 적어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도래 전에 필요한 자기주식 확보가 바람직. <p>(2) 1주당 행사가액의 산정방법은 적절한가? - 신주발행형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</p>	

주요 점검사항 및 관련법규	세 부 점 검 사 항	체 크
	- 자기주식교부형과 추가차액보상형 :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거래법 제84조의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※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	

2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계약체결

1. 주주총회 특별결의 시 부여한도와 이사회 결의 시 부여한도 검토사항 (관련 법규) 거래법 제189조의4, 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	(1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법에서 정한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가? 【주주총회 특별결의】 - 부여가능한도 :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【이사회결의】 - 부여가능한도 :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에서 정하는 한도 내 ※ 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에서 정하는 한도 최근 사업년도말 자본금이 • 3천억 이상 법인 :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• 1천억 이상~3천억 미만 법인 :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과 60만주 중 적은 수 • 1천억 미만 법인 :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 ※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이사회 결의 포함사항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, ②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,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,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, ⑤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	
2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취소	(1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는 임·직원과 계약체결시 관련사항을 포함하였는가? ① 행사가격, ②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, ③행사기간, ④행사방법 및 절차, ⑤양도 및 담보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, ⑥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의 이행기한, ⑦부여 취소에 관한 사항	



주요 점검사항 및 관련법규	세부 점검 사항	체크
<p>(관련 법규) 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⑦·⑧, 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9· 제36조의11②,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11, 기업공시실무안내 03(정기)-11</p>	<p>※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. 다만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봄.</p> <p>(2) 부여계약 및 부여취소 결의시 신고하였는가? -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를 한 때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부여를 취소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(이사회 결의 부여 시에는 이사회이사록 포함).</p> <p>※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①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, ②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, ③당해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.</p> <p>- 부여사실을 공시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, 피부여자의 현 직위를 공시하여야 함.</p> <p>※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부여할 때 블랙솔즈모형 등 회사가 적용하는 가치산정방식을 이용하여 산정된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를 기재함.</p> <p>(4) 부여계약 관련 서류를 본지점에 비치 열람토록 하였는가? ※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은 다음 서류를 본·지점에 비치하고 임·직원, 주주 또는 채권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 ① 금융위와 거래소에 신고한 서류, ② 부여계약서, ③ 매 사업년도말 현재 당해 사업연도분의 부여현황</p>	
<p>3.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</p>	<p>(1)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과 행사기간은 확인하였는가? -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결의일부터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짐.</p>	

주요 점검사항 및 관련법규	세 부 점 검 사 항	체 크
<p>(관련 법규) 거래법 제189조의4⑤, 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9②·③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기간은 부여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 행사가능 ※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 의사 또는 귀책사유로 퇴임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음. ※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당해 임·직원의 퇴임·퇴직일로 정한 경우 당해 임·직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·퇴직시 그 날부터 3월 이상 행사기한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함. 	
<p>4.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 (관련 법규) 발행공시규정 제104조, 제105조 ②·③, 제109조②, 제111조, 기업공시실무안내04-5·06-8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할 경우 공시사항은 확인하였는가? -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부여대상자·부여방법·행사시기 등 그 내용을 주요경영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하며, 이후 정기보고서에도 그 현황을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함. (2)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시 공시사항은 확인하였는가? -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신주발행하겠다는 사실이 이미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의 중복 공시 불필요 ※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은 발행공시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상증자 결정이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음. (3)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였는가? -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시 자기주식취득신고서 제출(취득목적 공시). -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주식 취득결과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. - 또한,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시 해당 취득결과보고서 제출 전이라도 새로운 취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(단, 기 제출된 취득신고서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목적이어야 하며,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로서 자기주식 교부하기로 한 수량이내이어야 함). 	



주요 점검사항 및 관련법규	세부 점검 사항	체크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교부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당해 취득에 대한 취득결과보고서 제출전이라도 이를 취득목적에 따라 교부할 수 있음. * 부여받은 자가 자진퇴사,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된 경우 다른 목적으로 자기주식 처분 가능 -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자기주식 교부시 최초 교부일의 5일전까지 행사가능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 신고서 제출(처분결과보고서의 제출은 생략 가능). 	

3. 주식매수선택권 정관규정 등기

<p>1. 등 기 (관련 법규) 상법 제317조·제183조, 대법원등기예규 제991호</p>	<p>(1)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등기하여야 함.</p> <p>※ 등기내용 :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,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,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, ④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,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</p> <p>※ 원시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시에, 변경정관에 의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정관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함.</p> <p>(2)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등기하였는가?</p> <p>※ 그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주발행청구서와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자기주식 교부하거나 차액을 보상하는 경우는 제외).</p>	
---	--	--